

전주지방법원 2021. 8. 31 선고 2021가단1213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피 고 E지역주택조합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에게 16,686,000원, 원고 B에게 30,000,000원, 원고 C에게 24,154,000원, 원고 D에게 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. 5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유재광

별지